

2021.02.01. 제정

4단계 BK21  
차세대 초지능 네트워크 융합  
교육연구단 운영 규정(안)

아주대학교

## 제 1 장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

**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아주대학교 차세대 초지능 네트워크 융합 교육연구단의 BK21 장학제도로 지원할 대학원생의 선발, 의무, 교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참여대학원생의 자격)

- ①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생(이하, 참여대학원생)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학생으로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,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 통합과정생으로 정한다.
-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.
- ③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내·외, 주·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.

### 제3조 (지원대학원생의 선발)

- ① 지원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으로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지도하에 있고, 성적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을 거쳐 선정한다.
- ② 지원대학원생의 수는 전체 참여대학원생의 70% 이내로 한다 (기준일: 매년 4월1일, 10월 1일).
- ③ 외국인 학생은 본 교육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로 추천할 수 있다.
- ④ 지원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 기간은 최소 1학기 이상(6개월)이며, 석사 월 70만원 이상, 박사 월 130만원 이상, 박사수료 월 100만원 이상을 BK21 장학금으로 지원한다.

### 제4조 (교체)

- ① 휴학, 자퇴, 학기 중 취업, 연구실적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연구경쟁력 유도 목적으로 지도교수의 권한 하에 다른 참여대학원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.

**제5조 (기타)**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이 요구할 경우 연구실적, 졸업 후 취업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
## 제 2 장 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

**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아주대학교 차세대 초지능 네트워크 융합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참여교수의 선정)**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(이하, 참여교수)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한 참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, 교육연구단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교수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3조 (참여교수의 증원 및 교체)**

- ① 교육연구단장이 사업 목표 달성에 있어 참여교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교수업적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참여교수의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.
- ②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 적격여부는 교육연구단에서 검증한다.
- ③ 참여교수가 BK21 교육연구단 내 교수업적 평가기준을 통해 2년 연속 “미흡” 평가를 받을 경우 해당 교수의 교체 여부를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참여교수의 참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,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의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교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.

### 제 3 장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지원

**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아주대학교 차세대 초지능 네트워크 융합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의 채용, 의무, 계약해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채용 시기)** 신진연구인력 필요가 인정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채용한다.

**제3조 (채용 원칙)**

- ① 지도교수에 의해 추천된 지원자는 참여교수 전원에게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지원서류를 공개하고, 운영위원회 평가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채용을 확정한다.
- ②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, 연구 분야의 밀접성, 연구실적의 우수함 이외에도 타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원활하고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고려하여 추천 및 채용된다.
- ③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실적을 고려하되 지도교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천 및 채용한다.
- ④ 신진연구인력을 3인 이상 채용 시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단, 1명 또는 2명 채용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

**제4조 (계약기간)**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최대 4년까지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**제5조 (신분 및 직위)**

- ① 계약교수는 특별임용교원으로 직위는 연구조교수 또는 연구부교수다.
- ② 박사후연구원은 정보통신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이다.

**제6조 (급여)** 월 300만원 이상 지급(퇴직금, 4대 보험 중 개인부담금 포함한 금액)이므로 근로

계약서 상 월급여액은 276.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)하되 연구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조정한다.

#### 제7조 (재임용 및 계약해지원칙)

- ① 신진연구인력과 관계되는 모든 평가는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 실적에 근거하여 재임용을 심사한다.
- ②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의 업적평가 시 부진 판정을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 (기타) 신진연구인력은 교육·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내·외 시간 강의 및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 및 지원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아주대학교 차세대 초지능 네트워크 융합 교육연구단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채용, 의무, 계약해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채용 시기) 산학협력전담인력의 필요가 인정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채용한다.

#### 제3조 (채용 원칙)

-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②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출신 비율, 교외 강의 기준은 신진연구인력과 동일하며,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채용 가능하다.

제4조 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최대 4년까지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 (급여) 채용 인력의 전문성,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단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. 파트 타임도 가능하다.

## 제 5 장 교육연구단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

#### 제1조 (참여교수의 성과급)

- ①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참여교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② 우수 참여교수 선발은 제5장 제2조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.

③ 성과급은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.(1,8차년도 연 240만원 이내)

**제2조 (참여교수의 성과급 평가기준 및 결과 활용)**

① 연도별 사업 종료 시점에 참여교수의 교육·연구·산학역량 및 봉사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.

[4단계 BK21 참여교수 성과급 평가세부기준]

구분		점수
교육역량 (100점)	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여도 (30)	· 강의 개설: 10점 · 위원회 활동: 정성 S급 20점/A 15/B 10/C 0
	Colloquium, 세미나 등 교육연구단 주관 행사 기여도 (30)	· 운영, 발표 등: 정성 S급 30점/A 20/B 10/C 0
	대표실적 기여도 (5)	· 신규과목 개발: 영어 3점, 한국어 2점 · 저서출간(ISBN 있는 경우) 2점
	인력양성 기여도 (15)	·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: 정성 S급 15/A 10/B 5/C 0)
	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기여도 (20)	· 해외대학/기관 교류: 정성 S급 20/A 10/B 0)
연구역량 (230점)	국제저널 논문지 게재 (100%) - Main(M): Corresponding or First Author - Sub(S): Co-Author	· JCR Rank 10% 이내: M 50점, S 30점 · JCR Rank 11~25% (Q1급): M 30점, S15점 · JCR Rank 26~50% (Q2급): M 15점, S10점 · JCR Rank 51~75% (Q3급): M 10점, S 5점 · JCR Rank 76~100% (Q4급): M 5점, S 2.5점
	국내저널 논문지 게재 (20%) - 교신저자, 공동저자	· 학진 등재지: 교신 2점, 공동 1점 · 학진 등재후보지 교신 1점, 공동 0.5점
	학술대회 발표 (50%) - Main(M): Corresponding or First Author - Sub(S): Co-Author	· 연구재단 CS분야 우수국제학회 (S급) - IF 4.0: M 100점, S 60점 - IF 3.0: M 60점, S 30점 - IF 2.0: M 30점, S 20점 - IF 1.0: M 20점, S 10점 · 기타 국제학술대회 (A급) - Regular: M 10점, S 5점 - Poster: M 5점, S 2.5점 · 기타 국제학술대회 (B급) - Regular: M 5점, S 2.5점 - Poster: M 2점, S 1점
	정부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(20)	· 정부기관: 10점(2개 이상), 5점(1개) · 해외기관(연계 포함): 10점
	국제화실적 (40)	· 국제학술활동 - 학회수상실적: S급학회 10점, AB급 5점 - 학회활동: 정성 S급 10점/A급 5점/B급 0점 · 국제공동연구: 실적 창출시 10점 · 해외연구자교류: 실적 창출시 10점
산학역량 (70점)	산학공동 교육과정 운영 (15)	· 산학공동연구실: 실적 창출시 5점 · 위원회 활동: 정성 S급 10점/A 5/B 0
	국내 및 해외 산업체/지자체 연구비 수주 (10)	· 국내: 실적 창출시 4점 · 해외: 실적 창출시 6점
	특허, 기술이전, 창업 (30)	· 기술이전: - 3,000만원 이상 : 20점

		- 1,000만원 이상 : 15점 - 1,000만원 미만 : 10점 · 국제특허 등록: 5점 · 창업: 5점
	(지역)산업문제해결 실적 (5)	· 실적 창출시 5점
	산학간 인적/물적 교류 (10)	· 실적 창출시 10점
봉사 (100점)	상위 항목 외 정성적 기여도 (100)	· 정성평가 S급 100/A 70/B 40/C 10)

- ②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“S(최우수)”, “A(우수)”, “B(보통)” 평가를 받은 교수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참여교수의 예산배분 : 자체평가 결과는 참여교수별 예산 배분에도 활용할 수 있다.

### 제3조 (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급)

-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의욕 증진과 우수 연구실적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행한다.
- ② 매년 2월, 8월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실적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.
- ③ 신진연구인력은 연도별 사업종료 시점에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실적이 우수할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.

### 제4조 (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 평가기준 및 결과 활용)

- ① 평가는 아래의 항목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. 성과급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 후,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승인한다.

[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평가세부기준]

구분		점수
교육역량	Colloquium, 세미나 등 교육연구단 주관 행사 기여도	· 발표 등 직접 기여: 100점 · 행사준비 등 간접 기여: 50점 · 단순참가(50% 이상) 등 간접 기여: 20점
	자체평가보고서, 실적조사 등 교육연구단 참여도	정성평가 (S 100점/A 70점/B 40점)
연구역량 (MIND 핵심역량: 실무(M)/ 창의(I)/ 발표(N)/ 쓰기(D))	국제저널 논문지 게재	· <b>JCR Rank 10% 이내</b> - 제1저자 500점, 공동 300점 · <b>JCR Rank 11~25% (Q1급)</b> - 제1저자 300점, 공동 200점 · <b>JCR Rank 26~50% (Q2급)</b> - 제1저자 150점, 공동 100점 · <b>JCR Rank 51~75% (Q3급)</b> - 제1저자 100점, 공동 70점 · <b>JCR Rank 76~100% (Q4급)</b> - 제1저자 70점, 공동 50점 · <b>그 외 기타</b> - 제1저자 50점, 공동 30점
	국내저널 논문지 게재	· <b>학진 등재지</b> - 제1저자 50점, 공동 30점 · <b>학진 등재후보지</b> - 제1저자 30점, 공동 15점
	학술대회 발표	· <b>연구재단 CS분야 우수국제학회 (S급)</b>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F 4.0</li> <li>* 제1저자 400점, 공동저자 300점</li> <li>- IF 3.0</li> <li>* 제1저자 300점, 공동저자 200점</li> <li>- IF 2.0</li> <li>* 제1저자 200점, 공동저자 100점</li> <li>- IF 1.0</li> <li>* 제1저자 100점, 공동저자 70점</li> <li>· 기타 국제학술대회 (A급)</li> <li>- Regular: 제1저자 50점, 공동 30</li> <li>- Poster: 제1저자 20점, 공동 10</li> <li>· 기타 국제학술대회 (B급)</li> <li>- Regular: 제1저자 30점, 공동 15점</li> <li>- Poster: 제1저자 10점, 공동 5점</li> <li>· 국내학술대회</li> <li>- Regular: 제1저자 10점, 공동 7점</li> <li>- Poster: 제1저자 5점, 공동 3점</li> </ul>
	수상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제학술대회</li> <li>- S급: IF3.0 이상 100점, IF3.0이하 50점</li> <li>- A급: 50점</li> <li>- B급: 30점</li> <li>· 국내학술대회</li> <li>- 최우수상: 30점, 우수상: 15점</li> <li>· 경진대회</li> <li>- 최우수상급: 100점, 우수상급: 50점</li> </ul>
산학역량	특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제특허: 출원 50점, 등록 150점</li> <li>· 국내특허: 출원 15점, 등록 50점</li> </ul>
	인턴십(Co-Op)	· 건당 50점
	창업	· 500점 (교육연구단 관련성 입증시)

- ②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“S(최우수)”, “A(우수)”, “B(보통)” 등급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인력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자체평가 결과 “S(최우수)”, “A(우수)” 등급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에게는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없어도 단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비를 특별 지원한다.
- ④ 자체평가 결과를 참여대학원생 교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 즉, “하위” 10%에 해당하는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중단 여부를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5조 (행정인력 전담직원 성과급) 매년 2월 교육연구단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적절한 예산 항목 내에서 기편성된 적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국제협력경비 사용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아주대학교 차세대 초지능 네트워크 융합 교육연구단의 국제협력경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국제학술대회 참가)

- ① 국제학술대회는 논문을 발표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참여대학원생을 동반하는 경우에 교육연구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교수에게도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제학술대회는 논문을 제출한 학술대회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  - 가. 참가국가수 : 4개국 이상
  - 나.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
  - 다.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% 이상(단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1 이상)
- ③ 국제학술대회 단순 참가할 경우, 교육연구단의 특화 전문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의 우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, 교육연구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참여교수는 단순 참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- ④ 국제학술대회 단순 참가는 제5장 제4조 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평가 결과 “S(최우수)”, “A(우수)” 등급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에게 기회를 우선적 보장한다.
- ⑤ 국제학술대회 단순 참가 목적으로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출장 후 상세 보고서를 별도로 교육연구단에 제출해야 한다.

## 제3조 (장·단기해외연수)

-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1. 장기연수 : 교육, 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 기관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
  2. 단기연수 : 교육, 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 기관에서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
- ② 해외연수생은 교육연구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MOU 체결(연구실 포함)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, 현지 공동연구 수행 등을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닌다.
- ③ 해외연수 참가 후 상세 연수결과보고서 제출해야한다.
- ④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 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.
- ⑤ 신진연구인력은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.

## 제4조 (해외석학 초빙)

- ① 해외석학은 해외 소재 대학, 연구소,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.
- ② 초빙수당(강연료) 이외에 체재비를 교내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# 제 7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지침

## 제1조 (자체평가)

-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